

2021 ~ 22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
과업내용서

2021. 5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I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1 ~ 22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

2. 과업목적

- 투자 결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의 재무모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사업 수익성 및 투자 적합성에 대한 예측 정확성 제고
- 외부 전문가의 재검증으로 투자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3. 과업범위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재무모델 자문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투자대상국의 조세제도 및 최적 자본구조 검토
- 기타 양사가 합의하는 사항

※ 상세 과업내용은 「II. 세부과업내용」 확인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 다만, 계약기간 중 관계법규의 개정, 정부 및 공사 예산 및 정책의 변경 등 현저한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음

5. 용어의 정의

- “용역”은 본 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재무모델 자문용역」을 말하고, “과업”은 본 용역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 “공사”는 용역을 발주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본 용역의 총괄관리자 및 각 자문 건을 요청한 사업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계약자(과업책임자 및 담당자 포함)를 말한다.
- 그 외 과업 내용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에 대하여 공사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1. 과업범위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재무모델 자문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투자대상이 속한 산업 분석
- 투자대상 관련기업의 신용분석 및 재무자료 분석
- 투자안의 평가가치 및 투자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 투자대상 분석 및 재무모델 수립·검토·수정(모델구성 검증 포함)
 - 투자안 예상수익률 및 민감도 분석
 - 투자금액 및 Exit Strategy의 적정성 평가
 - 산출된 예상수익률의 적정성 검토(순현재가치/비교사례 분석 등)
- 투자안에 수반된 위험요인 검토 및 민감도 분석
- 상기 내용에 기반한 종합적인 투자타당성 분석

□ 투자대상국의 조세제도 및 최적자본구조 검토

- SPC 설립/건설/운영 단계별 세무 및 세제 혜택, 부담금 검토
- 외국환 거래 관련 절차 및 제한 검토
- Tax Loss 최소화 투자구조 검토
- 국/내외 과소자본세제, 외환, 차입규제 등 제약조건이 고려된 최적자본구조 제안

□ 기타 양사가 합의하는 사항

2. 자문시간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자문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 자문 착수 전에 자문내역의 난이도, 통상적인 재무 자문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대 예상자문시간 한도를 제안하여야 한다. 최대 예상자문시간 제안 시 과업수행 인력별 예상 최대자문시간을 세분화하여 제안한다.
- 공사는 자문 요청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최대 예상자문시간을 검토하여 해당 자문 건에 대한 과업수행 인력별 최대 예상자문시간 한도를 사전에 정한다.
- 자문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인력이 현지 출장을 시행하는 경우 자문투입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3. 대가지급의 방법

- 대가는 계약체결 시 결정된 과업수행 인력별 시간당 재무자문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가 실제로 제공받은 자문시간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며 대가지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투입한 실제자문시간에 대한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업무내역서의 실제 건별 자문 금액이 사전에 정한 건별 최대 자문 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자문 한도금액까지만 대가를 지급한다.
- 해당 과업수행 인력별 단가는 아래의 '재무자문 과업수행 인력별 단가'를 적용한다.

<재무자문 과업수행 인력별 단가>

직 위	단 가
파트너급(회계사 경력 15년 이상)	360,000원
부장급(회계사 경력 9년 이상 15년 미만)	300,000원
과장급(회계사 경력 3년 이상 9년 미만)	240,000원

- 번역비, 공증 등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기타 비용은 발생 전 공사와 사전 협의 후 지출하며, 해당 비용은 매 건마다 실비로 별도 정산하여 지급한다.

- 현지 출장 시 경비는 <붙임> 공사의 여비규정 상 국외여비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부장급(회계사 경력 9년 이상 15년 미만)은 '1, 2급', 과장급(회계사 경력 3년 이상 9년 미만)인 경우 '팀원' 지급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 <붙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시작일 기준의 여비규정 적용

- 해외 제휴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일한 대가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자문비를 청구한다.

1. 용역 결과물의 제출

- 용역 결과물의 제출은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결과물의 제출 시기, 규격 및 수량, 제출방법 등은 공사의 관련 규정 및 의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다.

2. 용역 결과물 제출 목록

번호	항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p>과업 착수계</p> <p>* 주요포함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역책임자계 - 인력투입계획서 - 투입인력보안각서 - 청렴서약서 	A4	1식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2	<p>각 자문 건별</p> <p>과업수행계획서</p>	A4	1부	자문요청서 발송후 3일 이내	전자파일 제출
3	<p>각 자문 건별</p> <p>검토의견서</p>	A4 (전자파일 및 인쇄물)	20부	각 건별 자문요청서 기재 마감일까지	원본 및 전자파일 제출
4	기타 분석자료 일체	전자파일	1식	각 건별 자문요청서 기재 마감일까지	전자파일 제출

3. 검수 및 검사

- 결과물은 인도받은 후 14일 이내의 검수 및 검사기간을 가지며 공사가 요구하는 요건 등을 심사하여 최종 제출·검수 처리한다.

IV 과업 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1. 적용 기준 및 일반 조건

-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내용서 및 자문요청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비용 등 문제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과업 진행에 대하여 공사의 설명 요청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과업책임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공사의 수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자문요청서에 따라 자문을 수행할 시에는 각 건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결과물은 공사가 소유한다.
 - ※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용역 결과물을 사업주 등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조직 및 인력

- 계약상대자는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착수계 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해당 조직 및 인력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는 과업수행인력이 해당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 절차 및 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과업착수계를 공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계(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 인력투입계획서(주요이력, 재직증명서, 자격증)
 - 투입인력 보안각서
 - 청렴서약서
- 공사는 과업착수계를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3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과업착수계, 수행계획서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비 증가, 과업의 품질 및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과업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상호협의를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 공사는 자문요청 사안 발생 시, 각 건에 대한 자문요청서를 발송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에 대한 세부 과업수행인력, 수행일정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3일 이내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각 자문 건에 대한 수행계획을 확정하고, 계약상대자는 해당 건의 과업에 착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 건별 검토의견서를 자문요청서에 기재된 마감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분석자료 일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건별 검토의견서에 관한 대면 보고회를 개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과업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요청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보안 책임

- 계약상대자는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제54조(용역업체에 대한 보안대책)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과업수행 인력의 보안각서를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 및 공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제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물은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5. 위반 행위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의 발생 시에는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의 해지 및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과업내용서에 정한 사항 또는 공사의 제반 지시 및 요구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와 사전에 협의한 각 자문 건별 과업 수행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과업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 과업 수행 시 공사와 협의 없이 진행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거나 과업 결과물이 현저하게 부실할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공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업 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여 우리 공사의 사업 진행에 유·무형적 손해를 입힌 경우

6. 기타사항

- 본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는 사업 추진 상 필요에 따라 용역계약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재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용역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다.

<붙임> KIND 여비규정 [별표2] 상 국외여비 지급표

[별표 2]

국외여비지급표

(단위 : 미국불화)

구분 직급별	지역별 등급	교통비		체재비		
		항공	철도·선박	일비	숙박비	식비
사장, 감사	가 나 다 라	비즈니스	정액 또는 실비	50	실비	160
				50		117
				50		87
				50		73
상임이사	가 나 다 라	〃	〃	40	330	133
				40	250	99
				40	210	72
				40	150	61
1급, 2급	가 나 다 라	이코노미	〃	35	290	107
				35	210	78
				35	190	58
				35	140	49
3급	가 나 다 라	〃	〃	30	260	81
				30	190	59
				30	170	44
				30	130	37
4급 이하	가 나 다 라	〃	〃	26	240	67
				26	170	49
				26	150	37
				26	120	30

- 주 : 1. 지역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의 별표4(국외 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직원, 임산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직원은 중간정액(Business Class)을 지급할 수 있다.
 4.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